

조건부과(변경)통지서

성명

생년월일

면허번호

「도로교통법」 제80조 및 제80조의2에 따라 귀하의 운전면허에 아래와 같은 조건을 부과(변경)하였기에 통지합니다.

부과되는 조건	
변경되는 조건 (조건 변경 시)	- 변경 전 : - 변경 후 :

시·도경찰청장

직인

※ 알려드립니다.

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.